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001 발의연월일: 2022. 8. 24.

발 의 자:고민정·김남국·김민석

김영배 • 민형배 • 서영석

오영환 • 이동주 • 전용기

천준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질병관리청에서 실제로 수행 중인 국민건강영양조사는 현행법에서는 국민영양조사로 규정되어 있고, 실제 업무 수행을 질병관리청 소속기관들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업무 위임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국민영양조사를 국민건강영양조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질병관 리청장의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 제29조제3항 신설). 법률 제 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 제목 "(國民營養調査등)"을 "(국민건강영양조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영양에"를 "건강과 영양에"로, "국민영양조사"를 "국민건강영양조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국민영양조사와"를 "국민건강영양조사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민영양조사를"을 "국민건강영양조사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국민영양조사의"를 "국민건강영양조사의"로, "국민영양조사와"를 "국민건강영양조사의"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국민영양조사"를 "국민건강영양조사"로 한다. 제2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이 법에 의한 질병관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16條(國民營養調査등) ① 질병	제16조(국민건강영양조사등)①
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국민의 건강상태·식	
품섭취 · 식생활조사등 국민의	
<u>영양에</u> 관한 조사(이하 <u>"국민영</u>	<u>건강과 영양에</u> (
<u>양조사</u> "라 한다)를 정기적으로	- <u>국민건강영양조사</u>)
실시한다.	
②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에는	2
<u>국민영양조사와</u> 영양에 관한 지	<u>국민건강영양조사와</u>
도업무를 행하게 하기 위한 공	
무원을 두어야 한다.	
③ <u>국민영양조사를</u> 행하는 공무	③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	
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u>국민영양조사의</u> 내용 및 방	④ 국민건강영양조사의
법 기타 <u>국민영양조사와</u> 영양에	
관한 지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第27條(指導・訓練) ① 보건복지	제27조(지도・훈련) ①
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은 보	
건교육을 담당하거나 <u>국민영양</u>	<u>국민건강</u>
<u>조사</u> 및 영양에 관한 지도를 담	<u>영양조사</u>
당하는 공무원 또는 보건복지부	

령이 정하는 단체 및 공공기관 에 종사하는 담당자의 자질향상 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와 훈련 을 할 수 있다.

② (생략)

第29條(權限의 위임・委託) ① ・ 제29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

② (생략)

<신 설>

- ② (현행과 같음)
- - ② (현행과 같음)
 - ③ 이 법에 의한 질병관리청장 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소속기 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